



정책동향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실직여성, 미취업여성 등이 참가하는 사회복지도우미(여성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시행

1999년 1월 11일부터 저소득 실직여성이나 미취업 여성 등이 참여하는 여성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 사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관협회도 참여하는데, 총사업비는 148억여 원이다. 총 선발인원은 약 2,500명으로 하루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휴일·국경일 제외) 근무하게 되는데, 교통비·간식비 등을 포함해서 하루 25,000원(시간제 근무자는 12,500원)을 받는다. 이 사업은 1단계(1월 11일~3월 31일), 2단계(4월 12일~6월 30일), 3단계(7월 12일~9월 30일), 4단계(10월 11일~12월 10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1998년의 경우에는 9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2,200여 명의 저소득 실직여성들이 참여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등에서 요보호자들을 돌보면서 시설운영자의 일손부족을 덜어주었고, 도우미 당사자들의 생계보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신청자격

-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저소득 실직·미취업 여성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저소득자, 여성가장(또는 남편의 실직으로 인한 사실상의 가장), 시설이 원하는 자격·경력소지자 등을 우선 선발함.
- 공공근로에 참여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제 근무자(오전, 오

후를 택해 하루 4시간씩)도 모집함.

□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접수

- 근무를 원하는 여성들은 의료보험증과 구직등록확인서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취업알선창구)에 비치된 사회복지도우미 근무신청서(공공근로사업 공통양식과 다름)를 작성하여 제출함.
- 생활보호대상자 여부, 장애인 여부, 보유 자격·경력·교육경험 등 증빙서류는 희망자에 한해 제출함.

□ 선발방법

- 각 시·군·구 단위에서 신청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저소득 실직 여성가장, 남편이 실직한 저소득여성, 부양가족이 많거나 가족 중 장애인·장기질환자가 있는 여성의 순으로 선발됨.

□ 업무내용

- 전국 사회복지시설이나 재가 노인·장애인 등의 집에서 청소·세탁·간병 등 생활을 돕는 일반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전산·보육·행정 등의 전문업무 담당자도 일부(총 근무인원 25,00명 중 400여 명) 선발함.
 -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는 노인시설(173개소), 아동시설(274개소), 장애인시설(183개소), 여성시설(67개소) 등 총 819개의 사회복지수용시설과 보육시설(700개소), 미인가 사회복지시설(300여 개소) 등에서 근무함.
 - 재가노인·장애인 등을 돌 볼 여성도우미들은 270여 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사회복지관 부설)에 배치되어 근무함.

실업자 6,500명 고용창출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실업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방문간호, 생활용품재활용, 저소득아동생활지도 등 3개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하여 남녀실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가정해체방지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등 총 5개 공공근로사업이 1월 1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간호사업

- 선발인원: 18~65세 이하의 저소득 여성실업자 중 간호사자격소지자 1,750명 및 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 1,250명을 선발함.
- 근무기간 및 보수액: 1999년 1월 11일부터 2단계로 나누어 6개월간 사업을 실시하며, 하루 임금은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하여 30,000원(8시간 근무)임.
- 담당업무내용: 사회복지시설, 벽오지 등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건강관리, 물리치료, 보건교육 및 보건정책관련 자료 수집 등임.

□ 생활용품재활용사업

- 선발인원: 18~65세 이하의 저소득 여성실업자 중 가장 등을 우선순위로 880명을 선발함.
- 근무기간 및 보수액: 1999년 1월 11일부터 4단계로 나누어 10개월간 사업을 실시하며, 하루 임금은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하여 25,000원(8시간 근무)임.
- 담당업무내용: 재활용이 가능한 각종 생활용품을 수거, 판매, 수선, 세탁, 수리, 분류작업 및 배분 등을 담당함.

□ 저소득아동생활지도사업

- 선발인원: 18~65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 저소득 여성실업자 중 여성가장 및 아동지도관련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을 우선순위로 하여 819명을 선발함. 고등학교 졸업자는 보육교사 또는 방과후아동지도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관련경력이 있는 자임.
- 근무기간 및 보수액: 1999년 1월 11일부터 4단계로 나누어 10개월간 사업을 실시하며, 하루 임금은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하여 25,000원(8시간 근무)임.
- 담당업무내용: 저소득 초등학생의 방과후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민간비영리 공부방 및 사회복지관·보육시설·모자보호시설 등의 방과후 아동교실에서 초등학생 등의 방과후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를 담당함.

□ 가정해체방지사업

- 선발인원: 18~65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 실업자 중 ① 상담관련학과 졸

업자·자격증소지자 또는 경험자, ② 저소득세대주, ③ 부양가족이 많은자를 우선순위로 하여 270명을 선발함.

- 근무기간 및 보수액: 1999년 1월 11일부터 4단계로 나누어 10개월간 사업을 실시하며, 하루 임금은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하여 25,000원(8시간 근무)임.
- 담당업무내용: 배치된 가족상담기관에서 상담원으로서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상담업무를 담당함.

□ 저소득층생활안정 및 D/B구축사업

- 선발인원: 18~65세 이하의 전문대졸 이상 실업자 중 사회복지사를 우선순위로 하여 1,530명을 선발함.
- 근무기간 및 보수액: 1999년 1월 11일부터 2단계로 나누어 6개월간 사업을 실시하며, 하루 임금은 간식비 3,000원을 포함하여 25,000원(8시간 근무)임.
- 담당업무내용: 저소득층실태조사, 자료분석, 시·군·구 복지업무의 전산화 추진을 위한 D/B구축, 요보호대상자에 대한 급여 및 서비스제공 등 복지행정업무를 지원함.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정책명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계법령 및 시행일자
생활보호 지원 확대	생계보호비: 1인 월 162,000원 월동대책비: 1인 연 92,000원 해산보호비: 12만원	생계보호비 : 1인 월 166,000원 월동대책비 : 1인 연 95,000원 해산보호비 : 18만원	1999년 1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확대	저소득 실직자 31만명을 생활보호 대상으로 선정, 생계비·자녀학비·의료비 지원	57만명으로 대상자 확대	1999년 1월
자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지원	신 규	자활보호대상자중 공공근로·취로사업 참여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비 지원(13만가구, 가구당 15만원)	1999년 1월

정책명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계법령 및 시행일자
자활보호 대상자 장제비 지원	신 규	자활보호대상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1인당 20만원)	생활보호법 시행령 1999년 1월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상향조정	의사자: 사망당시 월최저임금액의 240배를 유족에게 지급(1998년 기준시 8271만원) 의상자: 의사자 유족보상금의 20~50%의 범위안에서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지급	의사자: 국가유공자 등의 기본연금 월액의 240배 유족에게 지급(1998년 기준시 1억 1160만원) 의상자: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의사자 유족보상금의 40~100%를 지급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1999년 4월
허례허식 행위금지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환관 등의 진열, 답례품 증여 등 금지 사항 규정	폐지, 자율에 의함.	건전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법 1999년 하반기 (국회 계류중)
경로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경로연금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을 수급하더라도 경로연금 지급	노인복지법 1999년 1월 (국회 계류중)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1~3급 장애인명의(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의 1500cc 이하 차량에 대하여 특별 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명의(함께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의 모든 차량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면제	조세감면 규제법 1999년 1월 1일
장애인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실시	신 규	장애인인 수증자 명의로 신탁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년 1월 1일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 지급 확대	1급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2급거택보호대상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2급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정신지체인은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장애인 포함)	1, 2급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정신지체인은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장애인 포함)	1999년 1월 1일
수화통역 센터운영	신 규	전국 16개 한국농아인협회 시·도 지부에 수화통역사 배치·운영	1999년 1월 1일
재활보조 기구교부	저소득층 장애인에 대한 의수족·보조기 교부(연 3천명)	1999년 7월부터 의수족보조기에 대한 의료보호 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 청각·언어장애인용 문자전화기 등 교부	1999년 7월 1일
의료보험 요양급여 기간연장	연간 의료보험 요양급여일수 300일	330일까지 요양급여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1999년 1월 1일

정책명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계법령 및 시행일자
도시지역주민 국민연금 가입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농어민, 군지역거주자에게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도시지역 자영업자 등 (890만명)도 국민연계에 당연 가입	국민연금법 1999년 4월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 위원회	위원장: 재경부장관 운용위원수: 15인	위원장: 보건복지부장관 운용위원수: 20인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 확대로 투명성 확보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공공자금 예탁이자를 개선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 최근 3개월간의 국민주택채권 1종 평균 유통수익률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간 협의 결정 5년 만기 국채수익률과 국민주택채권 1종 수익률 중 높은 것으로 결정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기금운용계획 국회보고	신 설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말까지 국회 보고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 주기 단축	연금급여를 3, 6, 9, 12월에 지급	연금급여의 지급주기를 매월지급으로 단축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국민연금 급여수준 하향조정	40년 가입시, 소득월액의 70% 수준의 연금지급	40년 가입시, 소득월액의 60% 수준의 연금 지급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단축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 최소 15년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입 기간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조기노령 연금수급 요건완화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20년 이상의 가입기간 필요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지면 조기노령연금수급이 가능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체납연금 보험료에 대한 가입기간 일부 인정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에서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체납하더라도 가입기간 불인정	근로자의 소득에서 원천공제된 기여금이 있는 경우 체납하더라도 그기간의 1/2을 가입기간으로 인정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퇴직금전환금 제도 폐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사용자, 퇴직금전환금에서 각 3%씩 부담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배우자 연금 분할제도 도입	신 규	배우자의 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시에는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노령연금 수급시에 상대배우자는 1/2 균분하여 분할지급	국민연금법 1999년 1월 1일

정책명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관계법령 및 시행일자
의약분업 실시	의사, 약사에게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를 구분없이 허용	의사는 처방을 하고 약사는 그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각각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	약사법 1999년 7월 1일 (국회계류중)
의약품 표준 소매가격 제도 폐지	현행 표준소매가는 공급자인 제약회사가 공장도 가격에 유통마진을 합하여 가격을 정하고 있으며, 약국에서는 공장도가격 미만 판매가 금지되고 있음.	약국에서 받고자 하는 가격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판매자가가격표시제로 전환	약사법 시행규칙 1999년 1월 1일
일부의약품 약국의 판매 허용	신 규	일반의약품 중 약리작용이 미약하여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구급성 의약품 등을 약국 외에서 판매 허용	약사법 1999년 7월 1일 (국회계류중)
식품접객 영업시간 자율화	단란주점, 유흥주점: 17:00~24:00	영업시간을 자율화 하되, 대낮 무도 유흥행위는 제한 유지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 기준고시 1999년 3월 1일
식품접객 영업 청소년 보호 강화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 고용시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영업허가 취소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유흥행위를 하게 한 때는 1차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청소년 유해업소(단란주점, 유흥주점)에 청소년 고용시 1차로 영업정지 3월, 2차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1999년 4월 (국회계류중)
식품관련 영업허가 제한 완화	영업허가 취소시 동일장소에는 동일영업허가(신고)를 6개월간, 영업자에게는 2년간 제한	영업허가 취소시 영업자에 대한 동일영업허가(신고)는 1년간 제한토록 완화, 다만, 청소년관련 불법영업에 따른 허가취소시, 동일 장소에는 전식품접객영업허가(신고)를 1년간, 영업자에게는 2년간 제한	식품위생 1999년 4월 (국회계류중)
진료기록의 열람·사본 교부 등 내용 확인 허용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내용탐지에 응할 수 없음.	환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환자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을 요구할 때에는 치료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	의료법 1999년 7월 1일 (국회계류중)
지정 진료제도	지정진료 의료기관에서 지정 진료의사로 임명을 받은 의사만 지정진료 실시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에서 모든 의사를 환자가 선택 가능	의료법 1999년 7월 1일 (국회계류중)